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목 차>

1. 영업등록 신청 시 공유사무실 사용 영업자의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의무화
2. 구매대행 제품 광고 시 홈페이지 안내 의무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 성 자	이름	김진환
	담당부서 (과)	수입식품정책과		직급	주무관
	국장	—		연락처	043-719-2159
	과장	강민호		이메일	mfdskjh@mail.go.kr

2025. 11. 05. 작성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직무대리 강민호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업등록 신청 시 공유사무실 사용 영업자의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의무화								
	2.규제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3.위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1.17~2025.12.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처리 ○ (문제점) 수입식품등 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독립된 사무소 운영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며, 임차하여 사용하는 보관창고에 대해서만 임차계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사무소로 나누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유사무실 등은 영업등록 신청 시 현행 제출서류 등으로는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움 ○ (필요성) 수입식품 영업의 등록·변경 시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요구 및 확인 필요								
	7.규제내용	○ 영업등록 신청 시 공유사무실 사용 영업자의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의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유사무실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영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공유사무실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영업자</td><td>연간 19,364개소(2024년 기준 신규 영업등록업소 16,000개소, 소재지 변경등록업소 3,364소) *이 중 공유사무실등을 사용하는 영업자(업소)만 해당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유사무실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영업자	연간 19,364개소(2024년 기준 신규 영업등록업소 16,000개소, 소재지 변경등록업소 3,364소) *이 중 공유사무실등을 사용하는 영업자(업소)만 해당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유사무실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영업자	연간 19,364개소(2024년 기준 신규 영업등록업소 16,000개소, 소재지 변경등록업소 3,364소) *이 중 공유사무실등을 사용하는 영업자(업소)만 해당됨								
9.규제목표	영업등록을 위한 서류 명확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영업자 관리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규제 행정기관이 영업자의 실제 영업 소재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 영업자의 시설기준 미준수 등 부실 영업 등록을 사전 차단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신뢰성 제고 * 공유사무실 사용 계약의 경우, 이용자가 영업등록을 위해 행정 기관에 제출할 서류(계약서)를 준비 및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계량적인 비용 편익/분석이 불가하여 정성적 비용/ 편익 분석 실시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 ----- ----- ----- ----- ----- ----- 제출해 야 ----- . ----- ----- ----- ----- ----- ----- 확 인해야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u>	2. <u>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또는 같은 시설이나 장소를 여러 사람 또는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처리
- 수입식품등 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독립된 사무소 운영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다만,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사무소로 나누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유사무실 등은 영업등록 신청 시 현행 제출서류 등으로는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수입식품 영업의 등록·변경 시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요구 및 확인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신청시 영업장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사무소로 나누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유사무실 등은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없이 시설사용계약서 제출만으로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이 가능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목표

공유사무실 사용자의 경우 영업등록시 제출서류 추가를 통해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영업장을 명확히 파악하여 영업자의 시설기준 미준수 등 부실 영업등록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실

있는 수입식품등 영업자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동 규제는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사무소로 나누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유사무실 등이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계약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과 관련된 법령등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고, 적합성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기술영향평가 대상 아님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용하는 시설 임대인으로 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국내 유사 입법사례 등 참고 및 정성적 판단
④ 대상 업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사무소로 나누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유사무실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자 ② 차등화 대상 결정 - 피 규제대상은 동 규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무소를 운영해야하는 수입식품등 영업을 시설기준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서류 확인 필요한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어 중소기업만 서류 제출 면제 등 차등화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불필요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영업 및 상시근로자 업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여 행정기관이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내실있는 영업자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민간 재량에 맡기는 방식의 시장유인적 설계는 적절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바 규제의 지속 유지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여 행정기관이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내실있는 영업자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요건 개념 등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포괄적 개념 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여 행정기관이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내실있는 영업자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함
네거티브 리스트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여 행정기관이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내실있는 영업자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불가함
사후 평가관리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여 행정기관이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내실있는 영업자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 규제 적용이 불가함
규제 샌드박스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여 행정기관이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내실있는 영업자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불가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 ⑬ 생략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충분히 해당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규정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사전 홍보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으로 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제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 비용 발생 없이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변경·신청시 행정기관에서 영업자의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건의('25.7월, 서울청)
- * (현행)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개선) 모든 영업자로 부터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의무화
- 규제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및 입법예고전 부서 의견 조회('25.8월, 식약처 전 부서)
- 부서 의견 조회를 통해 제출 의무 부과 대상을 '모든 영업자' 에서 시설기준 확인이 필요한 '공유사무실 이용 영업자' 대상으로 변경하여 피규제자 범위를 최소화하여 대안 마련 및 입안 추진('25.9월~)

2. 향후 평가계획

-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변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사용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예정

3. 종합결론

-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사무소로 나누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유사무실 등은 영업등록·변경 신청 시 현행 제출서류만으로는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이에 수입식품 영업의 등록·변경 신청 시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설사용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하는 규제대안을 마련함
- 해당 대안은 영업등록을 위한 서류 명확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영업자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4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업등록 신청 시 공유사무실 사용 영업자의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규제 행정기관이 영업자의 실제 영업 소재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 영업자의 시설기준 미준수 등 부실 영업 등록을 사전 차단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신뢰성 제고

* 공유사무실 사용 계약의 경우, 이용자가 영업등록·변경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계약서)를 준비 및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계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하여 정성적 비용/편익 분석 실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업등록 신청 시 공유사무실 사용 영업자의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의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을 등록, 변경 신청하려는 자
활동제목	공유사무실 시설사용계약서 준비 및 제출
비용항목	영업자의 추가 서류(시설사용계약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노력 및 시간 소모 증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공유사무실 사용 계약의 경우, 이용자가 영업등록·변경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계약서)를 준비 및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계량적인 비용 편익/분석이 불가하여 정성적 비용/편익 분석 실시

②정부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행정기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활동제목	영업자로부터 시설사용계약서를 영업등록 신청시 제출받아 확인
편익항목	규제 행정기관이 실제 영업자 소재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 영업자의 시설기준 미준수 부실 영업 등록을 사전 차단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신뢰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계량적인 편익 분석이 불가능하며 정성적 편익 분석 결과 행정기관이 영업자로부터 시설사용계약서를 제출받아 수입식품등 영업자로서 갖추어야할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영업자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구매대행 제품 광고 시 홈페이지 안내 의무 신설								
	2.규제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 [별표13]								
	3.위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1.17~2025.12.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온라인 소비 문화 확산과 물류 인프라 발달, 정보 접근성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식품등 시장 규모 지속 확대 * 국내반입건수(만건) : ('20) 1,770 → ('21) 2,314 → ('22) 2,283 → ('23) 2,292 → ('24) 2,493 － 국내 반입 해외직구 식품 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에 의한 구매대행 반입 건수는 약 15%의 비중을 차지 ○ (문제점) 구매대행 반입 해외식품등은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간소화된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소비자가 전 세계 판매되는 해외식품의 안전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해 해외식품 정보 제공 창구인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 필요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검사 부적합률(약10%)은 정식 수입식품(0.2%) 약 50배 수준 ○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 하려는 제품이 위해식품인지 사전 확인하는 의무(기시행)와 함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확인 안내 의무 부여 ○ (행정처분 기준 신설) 해당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에 따라 처분 기준 신설 * 시정명령(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후 재적발에 따른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미적용)								
	7.규제내용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제품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미안내 시 행정처분(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수입식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소(2025년 11월 기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소</td><td>33,287</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소	33,287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소	33,287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반입되는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간소화된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전 세계 해외식품 안전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인터넷									

		구매대행 해외식품 광고 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식품 관련 정보 제공 창구인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사이트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및 미안내 시 행정 처분(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모든 구매대행 광고에 안전 정보 확인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결정 전에 유해 성분 포함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어 해외직구식품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명확한 법적 의무와 실효적인 행정제재 기준 마련은 영업자들에게 의무 준수 유인으로 작용 － 이 규제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제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 3.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가. ~ 바. (생략) <신설>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 3.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광고를 할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table><tr><td>다.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td><td>법 제27조 및 제29조</td><td></td><td></td><td></td><td></td></tr><tr><td>1) ~ 4) (생략)</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신설></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다.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27조 및 제29조					1) ~ 4) (생략)						<신설>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table><tr><td>다.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td><td>법 제27조 및 제29조</td><td></td><td></td><td></td><td></td></tr><tr><td>1) ~ 4)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d></td></tr><tr><td>5) 별표 8 제3호사목을 위반한 경우</td><td></td><td>시정명령</td><td></td><td></td><td></td></tr></table>	다.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27조 및 제29조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8 제3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다.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27조 및 제29조																																				
1) ~ 4) (생략)																																					
<신설>																																					
다.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27조 및 제29조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8 제3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온라인 소비 문화 확산과 물류 인프라 발달, 정보 접근성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식품등 시장 규모 지속 확대

* 국내반입건수(만건) : ('20) 1,770 → ('21) 2,314 → ('22) 2,283 → ('23) 2,292 → ('24) 2,493

- 국내 반입 해외직구 식품 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에 의한 구매대행 반입 건수는 약 15%의 비중을 차지

- (문제점) 구매대행 반입 해외식품등은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간소화된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소비자가 전 세계 해외식품 안전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식품올바로' 사이트를 통해 위해식품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지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 필요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검사 부적합률(약 10%)은 정식 수입식품(0.2%) 약 50배 수준

-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 하려는 제품이 위해식품인지 사전 확인 하는 의무^{기시행}와 함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확인 안내 의무 필요

- (규제내용)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제품 상세정보에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기준 마련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하려는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안전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256개 제품('25.11.6.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
- √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해외직구식품 구매전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세요.

제품명 또는 상품명 등을 입력하세요.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국내 포털사 및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 포함)에서 해외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말합니다.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외직구 식품 관리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의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실시간 조회수

- 1 ふるんと蒟蒻ゼリーパウチ (Konjac Jelly Po...
- 2 Two-Per-Day Multivitamin
- 3 orthomol immun(tabletten/kapseln)
- 4 terminator test
- 5 citrulline malate

제품정보	위해정보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도움정보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농산물 수입금지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 정식수입제품 - 국내 건강기능식품	- 해외위해식품 - 해외리콜 정보 - 위해정보 처리 속보 (공정위) - 글로벌 리콜포털 (OECD)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해외사업자 판매제품)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내사업자 구매대행제품)	- 안전정보 - 독성정보 - 행복한 관문(관세청 블로그) - 위해식품 차단정보 (OPEN-API)

- (기대효과) 인터넷 구매대행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구매대행 제품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홈페이지 안내 의무 신설
-------	-----	--

	내용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하려는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접 구매 해외식품등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그 광고에 포함 의무 규정 및 미이행시 행정제재 기준을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구매대행 제품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를 영업자가가 자율적으로 안내
	내용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하려는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접 구매 해외식품등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그 광고에 포함하는 것을 자율로 하도록 권고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유해 성분 포함 제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며, 규제 준수율 향상 및 억제력 제고 가능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광고 제작 및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소비자가 확인해야할 정보가 추가되어 구매 편의성 저하 가능
규제대안2	영업자는 광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며, 규제기관은 법규 개정 절차 없이 행정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신속하게 도입하여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내용 수정 가능	규제 실효성 및 준수율 저하되어 대부분의 광고에 안전정보 안내 문구가 포함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위해 식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자율 권고 방식은 행정업무 이행에 대한 영업자 부담과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을 위험이 크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자율에만 맡기기보다는 명확한 의무 규정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규제목표

모든 구매대행 광고에 안전 정보 확인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결정 전에 유해 성분 포함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어 해외직구식품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명확한 법적 의무와 실효적인 행정제재 기준 마련은 영업자들에게 의무 준수 유인으로 작용

이 규제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제 수단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소한의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순기준(기술규정)과 관련된 법령등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고, 적합성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기술영향평가 대상 아님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 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영업자에게 추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소비자를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게 주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으로 법을 준수할 경우 발생할 비용은 없음
④ 대상 업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② 차등화 대상 결정 - 피규제대상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라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적용은 적절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불필요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 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영업 및 상시근로자 업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 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 재량에 맡기는 방식의 시장유인적 설계는 적절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바 규제의 지속 유지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요건 개념 등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포괄적 개념 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함
네거티브 리스트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불가함
사후 평가관리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 규제 적용이 불가함
규제 샌드박스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불가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구매대행 제품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 안내 의무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구매대행 제품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 안내 의무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 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충분히 해당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규정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 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사전 홍보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으로 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 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 비용 발생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인터넷 구매대행 해외직구식품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위해식품 차단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규제 도입 방안 검토('25년 8월)
- 규제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및 입법예고 전 부서 의견 조회('25.8월, 식약처 전 부서)

2. 향후 평가계획

-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시 상세정보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시정명령)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4. 종합결론

- 모든 구매대행 광고에 안전 정보 확인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결정 전에 유해 성분 포함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어 해외직구식품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발생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명확한 법적 의무와 실효적인 행정제재 기준 마련은 영업자들에게 의무 준수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대안은 소비자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규제라고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구매대행 제품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 안내 의무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모든 구매대행 광고에 안전 정보 확인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결정 전에 유해 성분 포함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어 해외직구식품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명확한 법적 의무와 실효적인 행정제재 기준 마련은 영업자들에게 의무 준수 유인으로 작용
- 이 규제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제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구매대행 제품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 안내 의무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활동제목	구매대행 제품 광고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 안내
비용항목	구매대행 제품 광고에 의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 안내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제품 광고 제작 시 시간 소모 증가 및 디자인에 제약 발생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에 안전정보 홈페이지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계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하여 정성적 비용/편익 분석 실시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해외직구식품 소비자
활동제목	구매대행 해외직구제품 구매 시 광고에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편익항목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해외식품의 안전 정보를 직접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유해 성분 포함 제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구매대행하는 제품 광고에 안전정보 홈페이지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계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하여 정성적 비용/편익 분석 실시